Ver. 1.0

직업 건강 관리의 정석 4편

근로자의 건강증진 향상 편

기업의 경쟁력 키우기?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기업건강증진지수 평가를 위한 사용자 매뉴얼

2017년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기업건강증진지수』 개요

❍ 기업건강증진지수

- 기업의 건강증진 요구에 대비하여 활동수준을 진단·평가하는 도구

❍ 개발 배경

- 근로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에 소속 직장의 건강문화가 어떤가에 따라 건강수준이 크게 달라짐.
- 정부는 그동안 기업 내 건강증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근본적 해결책은 기업 스스로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임.
- 기업이 스스로 활동수준을 자가진단하고 계획 수립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자가진단 도구 개발이 요구됨.
- 이러한 배경 하에 기업의 건강증진활동 수준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기업건강증진지수가 개발됨.

❍ 지수의 구성

- 기업건강증진지수는 해당 사업장의 요구도와 활동도로 구분되며, 이 두 가지 평가결과를 조합하여 산출된 최종 '기업건강증진지수'로 표현

기업건강지수 = (활동도 ÷ 요구도)×100

- 요구도(Requirement)란 사업장의 근로형태, 근로자의 건강실태를 평가하여 점수한 것으로 해당 사업장의 '건강 잠재위험수준'을 의미
- 활동도(Activity)란 해당 사업장의 건강증진활동 수준을 평가하는 것

❍ 지수의 활용

- 기업의 건강증진활동 수준이 기준(100점)에 어느 정도 도달하였는지 객관적으로 파악
- 기업의 건강증진활동 수준이 예전에 비하여 어느 정도 발전하였는지 수치적으로 파악
- 건강증진 취약분야 도출로 비용효과적인 건강증진활동을 유인

『기업건강증진지수표 양식』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지수 : ___점
(Workplace Health Promotion Activity Index)

활동지수

《기준표》 [미도입] [도입] [활성화] [우수]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추진 실태

※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지수 산출절차 Guide.1'를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근로자 분포특성

근로·건강 특성	① 근로자수	② 장년 (50세↑)	③ 장시간 (60hr/주)	④ 교대 (야간)	⑤ 근골부담 작업	⑥ 고객응대 (업무의 50%↑)	⑦ 업무상질병(3년간) 근골질환	⑧ 업무상질병(3년간) 뇌심질환	⑨ 일반검진 미수검자	⑩ 일반질병 의심자·유소견자
근로자수 (비율)	___명	___명	___명	___명	___명	___명	___명	___명	___명	___명
		___%	___%	___%	___%	___%	___%	___%	___%	___%

[2단계]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실태

(기준: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해당란에 O/X 표시)

건강증진활동 요구분야	⑪ 추진 여부	⑫ 실태조사	⑬ 프로그램 운영: 집중관리 대상파악	⑬ 추진프로그램 수	⑬ 근로자 요구반영	⑬ 성과 평가 여부	⑬ 결과 환류 여부	⑭ 프로그램 적용범위	⑮ 사업장지원: ⓐ 조직/예산	⑮ ⓑ 환경/시설
근골질환예방	(O, X)	(O, X)	(O, X)	___종	(O, X)	(O, X)	(O, X)		___종	
뇌심질환예방	(O, X)	(O, X)	(O, X)	___종	(O, X)	(O, X)	(O, X)		___종	
스트레스관리	(O, X)	(O, X)	(O, X)	___종	(O, X)	(O, X)	(O, X)		___종	
생활습관 개선	(O, X)	(O, X)	(O, X)	___종	(O, X)	(O, X)	(O, X)		___종	

⑫실태조사 실시여부는 근골(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 등), 뇌심(뇌심질환발병위험도평가 등), 스트레스관리(직무스트레스평가 등), 생활습관개선(금연, 운동, 절주, 영양 조사 등)
⑭프로그램 적용범위는 미적용, 위험군, 위험군+건강군 중 선택
⑮사업장지원 중 ⓐ조직/예산은 ①추진조직, ②추진예산, ③인센티브, ④벤치마킹, ⑤담당자교육 중 지원항목 종수를 기재하고, ⓑ조직/예산은 해당없음, 환경, 시설, 환경+시설 중 선택

[3단계] 사업장 인프라 구축 실태

⑯사내협력사	⑰ 건강증진활동 추진자	⑱ 지역사회 활용여부 (공단, 보건소 등)	⑲기관명 기재 (활용순)
1개소	ⓐ보건관리자, ⓑ 안전관리자, ⓒ업무위탁요원, ⓓ 그 외 사업장담당자	ⓐ활용, ⓑ비활용	ⓐ
2명	ⓐ의 자격 : (건강증진(간호사 등)( ) or 산업위생( ) or 그 외(V))	ⓐ활용기관수:____개소	ⓑ ⓒ

2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지수 산출

※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지수 산출절차 Guide.2'를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건강 잠재위험도

※ 1의 '근로자 특성'의 해당항목 비율을 참조하여 점수 부여(1~5점), 미파악시 3점

건강잠재위험도 (5점척도)		① 장년 (50세↑)	② 장시간 (60hr/주)	③ 교대 (야간)	④ 근골부담 작업	⑤ 고객응대 (업무의 50%↑)	⑥ 업무상질병(3년간) 근골질환	⑦ 업무상질병(3년간) 뇌심질환	⑧ 일반검진 미수검자	⑨ 일반질병 의심자·유소견자
근로자 비율	5점	50%	50%	50%	50%	50%	2명이상	1명이상	5%	50%
	4점	25%	25%	25%	25%	25%	1명		3%	25%
	3점	10%	10%	10%	10%	10%			1%	10%
	2점	1%	1%	1%	1%미만	1%			1%미만	1%
	1점	1%미만	1%미만	1%미만		1%미만	없음	없음	없음	1%미만

[2단계] 건강증진활동 요구도

※ 근로자 특성(①~⑨)별 '[1단계] 건강 잠재위험도' 점수를 기재한 후, 기재한 값 중 최대값을 요구도점수로 기재(1~5점)

건강증진활동 분야	요구도 (5점척도)	① 장년 (50세↑)	② 장시간 (60hr/주)	③ 교대 (야간)	④ 근골부담 작업	⑤ 고객응대 (50%↑)	⑥ 업무상질병(3년간) 근골질환	⑦ 업무상질병(3년간) 뇌심질환	⑧ 일반검진 미수검자	⑨ 일반질병 의심자·유소견자
근골격계질환	___점	__점			__점		__점			
뇌심혈관질환	_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직무스트레스	_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생활습관 개선	_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3단계] 건강증진활동 추진수준

※ 건강증진활동 추진분야별 추진여부에 따라 ①~⑩해당 란에 점수(0~2점) 표시

건강증진활동 분야	추진수준 (5점만점) ∑(①~⑩)/4	건강증진활동별 세부 추진내역 ① 근로자 분포특성 파악여부	② 실태조사 실시여부	③ 집중관리 대상파악	④ 프로그램 추진 수	⑤ 근로자 요구 반영여부	⑥ 성과평가 여부	⑦ 결과환류 여부	⑧ 프로그램 적용범위	사업장 지원여부 ⑨조직/예산	⑩시설/환경개선
근골격계질환	_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뇌심혈관질환	_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직무스트레스	_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생활습관개선	_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__점

[4단계]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지수 산출 <우선순위 산정시 활동지수 낮은순, 요구도점수 높은순으로 추진>

건강증진활동 추진분야	추진여부 (O,X)	요구도 ⓐ원점수 (1~5)	요구도 ⓑ환산점수 (ⓐ * 20)	추진수준 ⓒ원점수 (1~5)	추진수준 ⓓ환산점수 (ⓒ * 20)	건강증진 활동지수 (ⓓ/ⓑ)*100)
평균 (∑①~④)/4)		___점	___점	___점	___점	___점
① 근골격계질환 예방	(○, X)	___점	___점	___점	___점	___점
② 뇌심혈관질환 예방	(○, X)	___점	___점	___점	___점	___점
③ 직무스트레스 관리	(○, X)	___점	___점	___점	___점	___점
④ 생활습관 개선	(○, X)	___점	___점	___점	___점	___점

* 각 활동별 [활동지수] 산출값이 100이상인 경우 100으로 처리

Guide.1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추진실태 작성법

분야	연번	항목	작성 가이드	비고
근로자 분포 특성	①	▪근로자수	▪소속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②	▪장년(50세↑)	▪50세 이상의 근로자수 및 전체근로자수(①) 중 점유율(%)	
	③	▪장시간(60주)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수 및 점유율(%)	
	④	▪교대(야간)	▪교대근무 및 야간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수 및 점유율(%)	
	⑤	▪근골부담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수 및 점유율(%)	
	⑥	▪고객응대	▪업무의 50%이상이 고객응대인 근로자수 및 점유율(%)	
	⑦	▪업무상질병(3년) [근골격계질환]	▪산업재해로 3년간 승인받은 '근골격계질환'의 질환자수 및 점유율(%)	
	⑧	▪업무상질병(3년) [뇌심혈관질환]	▪산업재해로 3년간 승인받은 '뇌심혈관질환'의 질환자수 및 점유율(%)	
	⑨	▪일반검진미수검자	▪최근 1년간 일반검진을 미수검한 근로자수 및 점유율(%)	
	⑩	▪일반질병의심자, 유소견자	▪일반검진결과, 질병의심자, 유소견자판정 근로자 및 점유율(%)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실태	⑪	▪추진여부	▪근골,뇌심,스트레스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는 경우(O표시)	그외 (X)
	⑫	▪조사 실시여부	▪해당 분야별로 근로자/환경 등의 사업장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경우(O표시)[법적, 자율적 조사 모두 포함)	그외 (X)
	⑬	▪프로그램 진행	▪(집중관리대상파악) 해당 건강증진활동별 "고위험"근로자를 파악하고 있는 경우(O표시) ▪(추진 중인 프로그램수) 해당 건강증진활동별로 현재 추진 중인 프로그램 수 기재(예, 2종) ▪(근로자 요구 반영) 해당 건강증진활동별로 추진계획 수립 시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O표시) ▪(성과평가 여부) 최근 추진한 건강증진활동별 결과 분석 등을 통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O표시) ▪(결과환류 여부) 최근 추진한 건강증진활동별 결과를 토대로 차후 시행할 건강증진활동 계획에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O표시)	그외 (X)
	⑭	▪프로그램 적용범위	▪(근로자) 각 건강증진활동별로 대상에 근로자의 건강위험 수준에 따른 분류 기재(미적용, 위험군, 위험군+건강군)	
	⑮	▪사업장 지원	▪(조직/예산)사업자에서 지원하고 있는 항목 수를 기재 ※ ①추진조직, ②추진예산, ③인센티브, ④벤치마킹, ⑤담당자 교육 중 지원항목 종수를 기재 ▪(환경/시설지원) 사업장 내, 작업여건 개선(환경) 및 건강증진실/흡연구역 마련(시설) 등의 지원이 있는 경우	
사업장 인프라	⑯	▪사내협력사	▪사내 협력사 수 및 협력사 소속 근로자수	
	⑰	▪건강증진활동추진자	▪건강증진활동추진자의 주체 및 자격 (O표시)	
	⑱	▪지역사회활용여부	▪건강증진활동 추진 시, 지역사회(안전보건공단, 보건소 등)를 활용여부 기재(활용시 활용기관 수 기재)	
	⑲	▪기관명 기재	▪활용하는 지역사회기관을 활용빈도가 높은 기관순으로 기재	

Guide.2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지수 산출절차

1 건강증진활동지수 = (건강증진활동 요구도* x 건강증진활동 추진수준)

* 건강증진활동 요구도 : 요구분야별 건강 잠재위험도 점수 중 최대값

2 평가 절차

절차	①건강잠재위험도평가	②건강증진활동 요구도평가	③건강증진활동 추진수준 평가	④건강증진활동지수 산출
참고	1사업장 건강추진실태	①건강잠재위험도평가	1사업장 건강추진실태 ②건강증진활동 요구도평가	②건강증진활동 요구도평가 ③건강증진활동 추진수준 평가

[1단계] 건강 잠재위험도(점수)

※ 1의 '근로자 특성'의 해당항목 비율을 참조하여 점수 부여(1~5점)_*해당란 체크*(미파악시 3점)

[2단계] 건강증진활동 요구도(점수)

※ 근로자 특성(①~⑨)별 '1단계(건강 잠재위험도)' 점수를 기재한 후,

※ 기재한 값 중 최대값을 요구도점수로 기재(1~5점)

[3단계] 건강증진활동 추진수준 평가

※ 건강증진활동 추진분야별 추진여부에 따른 해당 란에 점수(0~2점) 표시

※ 추진하지 않는 경우, 추진여부에"X"표시하고, 세부 추진내역은 미기재

1. 추진수준 점수산출 방식

※ 건강증진활동 세부 추진 점수: [(①~⑩) 항목 점수의 합) ÷ 4]

2. 건강증진활동별 세부 추진내역 점수산출 방식 : 0 ~ 2점

가. ①항목 : "2**단계(건강증진활동 요구도 평가)**"의 각 활동별로 조사하여야 할 항목을 모수로 분포특성 파악 비율을 평가

※ 예) 근골격계질환분야는 ①장년, ④근골부담작업, ⑥근골질환이 조사대상의 모수가 됨.
이 중 2개 분야를 조사했다면, 2/3*100= 66.6% 이므로 1점 부여

나. ②~⑩ : "1**사업장 추진실태**" 기재항목 참조

점수분포	건강증진활동별 세부 추진여부									
	① 근로자 분포특성 파악여부	② 실태조사 실시여부	③ 집중관리 대상파악	④ 프로그램 추진 수	⑤ 근로자 요구 반영여부	⑥ 성과평가 여부	⑦ 결과환류 여부	⑧ 프로그램 적용범위	사업장 지원여부	
									⑨조직/예산	⑩시설/환경개선
2점	80%이상	실시	실시	2종이상	실시	실시	실시	위험군+건강군	3종이상	2분야
1점	50%이상	-	-	1종	-	-	-	위험군	1~2종	1분야
0점	50%미만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포함	미지원	미지원

* ④프로그램추진 수 : 생활습관개선 분야에 한함. 타 분야의 경우 1종이상 2점, 미실시 0점 부여

[4단계]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지수 산출

1. 산출절차

① 추진여부 파악 → ② 요구도 환산점수 산출 → ③ 추진수준 환산점수 산출 →
④ 사업장 건강증진활동지수 산출

2. [요구도] 환산점수 산출 방법

ⓐ 원점수 : "2**단계(건강증진활동 요구도 평가)**" 의 요구도 점수 기재

ⓑ 환산점수 : (원점수) x 20 (100점 만점)

3. [추진수준] 환산점수 산출 방법

ⓔ 원점수 : "3**단계(건강증진활동 추진수준)**"의 추진수준 점수 기재

ⓕ 환산점수 : (원점수) x 20 (100점 만점)

4. 건강증진활동 지수 산출방법 : (ⓓ추진수준(환산점수)) / (ⓑ요구도(환산점수)) * 100 ⇒ 평균값

『2017년 기업건강증진지수 변경 내역』

<table>
<tr><th>구분</th><th>변경 전</th><th>변경 후</th></tr>
<tr><td>1 건강증진 실태
[2단계]건강증진 활동 실태</td><td>
<table>
<tr><th colspan="3">⑭ 프로그램 적용범위</th><th>⑮</th></tr>
<tr><th>ⓐ 고위험, 위험군</th><th>ⓑ 건강군</th><th>ⓒ 환경/시설</th><th>사업장 지원</th></tr>
<tr><td>O , X</td><td>O , X</td><td>분야</td><td>분야</td></tr>
<tr><td>O , X</td><td>O , X</td><td>분야</td><td>분야</td></tr>
<tr><td>O , X</td><td>O , X</td><td>분야</td><td>분야</td></tr>
<tr><td>O , X</td><td>O , X</td><td>분야</td><td>분야</td></tr>
</table>
· '⑭프로그램 적용범위'를 'ⓐ고위험, 위험군', 'ⓑ건강군', 'ⓒ환경/시설'로 구분.
· '⑮사업장 지원'은 단독으로 평가
</td><td>
<table>
<tr><th>⑭</th><th colspan="2">⑮</th></tr>
<tr><th>프로그램 적용범위</th><th>ⓐ 조직/예산</th><th>ⓑ 환경/시설</th></tr>
<tr><td></td><td>분야</td><td>분야</td></tr>
<tr><td></td><td>분야</td><td>분야</td></tr>
<tr><td></td><td>분야</td><td>분야</td></tr>
<tr><td></td><td>분야</td><td>분야</td></tr>
</table>
· '⑭프로그램 적용범위'에서 '환경/시설'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평가
· '⑮사업장 지원'의 기존 평가 항목을 하부항목인 'ⓐ조직/예산'으로 변경하고, ⑭에서 평가하던 '환경/시설'을 하부항목 ⓑ로 추가
</td></tr>
<tr><td>2 건강증진지수 산출
[1단계]건강잠재위험도</td><td>
<table>
<tr><th>❹</th><th>❺</th><th colspan="2">❻ ❼</th><th>❽</th></tr>
<tr><th>근골부담 작업</th><th>고객응대 (업무의 50%↑)</th><th colspan="2">업무상질병(3년간)</th><th>일반검진 미수검자</th></tr>
<tr><th></th><th></th><th>근골질환</th><th>뇌심질환</th><th></th></tr>
<tr><td>50% 이상</td><td>50% 이상</td><td>10% or 10명 이상</td><td>1% or 5명 이상</td><td>10% 이상</td></tr>
<tr><td>25%~50% 미만</td><td>25%~50% 미만</td><td>5% or 5명 이상</td><td>0.5% or 1명 이상</td><td>5%~10% 미만</td></tr>
<tr><td>10%~25% 미만</td><td>10%~25% 미만</td><td>1% or 1명 이상</td><td>0.1%</td><td>1%~5% 미만</td></tr>
<tr><td>1%~10% 미만</td><td>1%~10% 미만</td><td>0.1%</td><td>0.01%</td><td>0.1%~1% 미만</td></tr>
<tr><td>1% 미만</td><td>1% 미만</td><td>없음</td><td>없음</td><td>0.1% 미만</td></tr>
</table>
· 모든 항목에 대해 미파악의 경우 5점 부여
· '❹근골부담작업'이 1% 미만인 경우 1점 부여
· '❻근골질환', '❼뇌심질환'에 비율과 수를 같이 고려
· '❽일반검진 미수검자'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5점을 부여하는 등 위험도 평가가 보수적임
</td><td>
<table>
<tr><th>❹</th><th>❺</th><th colspan="2">❻ ❼</th><th>❽</th></tr>
<tr><th>근골부담 작업</th><th>고객응대 (업무의 50%↑)</th><th colspan="2">업무상질병(3년간)</th><th>일반검진 미수검자</th></tr>
<tr><th></th><th></th><th>근골질환</th><th>뇌심질환</th><th></th></tr>
<tr><td>50% 이상</td><td>50% 이상</td><td>2명 이상</td><td>1명 이상</td><td>5% 이상</td></tr>
<tr><td>25%~50% 미만</td><td>25%~50% 미만</td><td>1명</td><td></td><td>3%~5% 미만</td></tr>
<tr><td>10%~25% 미만</td><td>10%~25% 미만</td><td></td><td></td><td>1%~3% 미만</td></tr>
<tr><td>10% 미만</td><td>1%~10% 미만</td><td></td><td></td><td>1% 미만</td></tr>
<tr><td></td><td>1% 미만</td><td>없음</td><td>없음</td><td>없음</td></tr>
</table>
· 모든 항목에 대해 미파악의 경우 3점 부여
· '❹근골부담작업'이 없어도 위험도 2점 부여
· '❻근골질환'이 2명 이상 5점, 1명이면 4점, 없으면 1점 부여
· '❼뇌심질환'이 1명 이상 5점, 없으면 1점 부여
· '❽일반검진 미수검자' 비율이 5% 이상 5점, 3% 이상 4점, 1% 이상 3점, 1% 미만 2점, 없으면 1점 부여
</td></tr>
<tr><td>[3단계]건강잠재위험도</td><td>
<table>
<tr><th colspan="7">건강증진활동별 세부 추진내역</th></tr>
<tr><th>❹</th><th>❺</th><th>❻</th><th>❼</th><th colspan="2">프로그램 적용범위</th><th>❿</th></tr>
<tr><th>프로그램 추진 수</th><th>근로자 요구 반영여부</th><th>성과평가 여부</th><th>결과환류 여부</th><th>❽ 위험군, 건강인</th><th>❾ 시설/환경개선</th><th>사업장 지원여부</th></tr>
<tr><td>점</td><td>점</td><td>점</td><td>점</td><td>점</td><td>점</td><td>점</td></tr>
<tr><td>점</td><td>점</td><td>점</td><td>점</td><td>점</td><td>점</td><td>점</td></tr>
<tr><td>점</td><td>점</td><td>점</td><td>점</td><td>점</td><td>점</td><td>점</td></tr>
<tr><td>점</td><td>점</td><td>점</td><td>점</td><td>점</td><td>점</td><td>점</td></tr>
</table>
· 프로그램 적용범위 및 사업장 지원여부가 실태 파악과 같은 구조
· 프로그램 추진수 2종 이상일 때 2점, 1종은 1점, 미실시는 0점
</td><td>
<table>
<tr><th colspan="8">건강증진활동별 세부 추진내역</th></tr>
<tr><th>❹</th><th>❺</th><th>❻</th><th>❼</th><th>❽</th><th colspan="2">❾</th></tr>
<tr><th>프로그램 추진 수</th><th>근로자 요구 반영여부</th><th>성과평가 여부</th><th>결과환류 여부</th><th>프로그램 적용범위</th><th colspan="2">사업장 지원여부</th></tr>
<tr><th></th><th></th><th></th><th></th><th></th><th>조직/예산</th><th>시설/환경개선</th></tr>
<tr><td>점</td><td>점</td><td>점</td><td>점</td><td>점</td><td>점</td><td>점</td></tr>
<tr><td>점</td><td>점</td><td>점</td><td>점</td><td>점</td><td>점</td><td>점</td></tr>
<tr><td>점</td><td>점</td><td>점</td><td>점</td><td>점</td><td>점</td><td>점</td></tr>
<tr><td>점</td><td>점</td><td>점</td><td>점</td><td>점</td><td>점</td><td>점</td></tr>
</table>
· 프로그램 적용범위 및 사업장 지원여부 구조를 실태 파악과 통일
· 생활습관개선에 한해서 프로그램 추진수 2종 이상일 때 2점, 1종은 1점, 미실시는 0점을 부여하고, 타 분야는 1종 이상일 때 2점, 미실시는 0점 부여
</td></tr>
</table>

『기업건강증진지수』 적용 사례

○ 사례1. 제조업, 상시근로자 250명

- 최근 몇 년간 신규근로자를 받지 않아 장년근로자의 비율이 높음.
- 4조 3교대 작업형태이며, 대부분 공정이 자동화
- 보건관리자에 의해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2종)과 뇌심혈관질환 예방 교육이 진행되고 심리상담사에 의한 직무스트레스 관리가 이루어짐.

[1단계] 근로특성 및 건강실태(해당자가 없는 경우 숫자 "0"을 기입, 파악하지 않았으면 빈칸)

근로.건강	① 근로자수	② 장년(50세↑)	③ 장시간(60hr/주↑)	④ 교대(야간)	⑤ 근골부담작업	⑥ 고객응대 (연무의 60%↑)	⑦ 근골격계질환 (업무상질병 3년간)	⑧ 뇌심질환 (업무상질병 3년간)	⑨ 일반검진미수검자	⑩ 일반질병 요관찰·유소견자
근로자수	250명	190명	20명	170명	20명	0명	0명	0명	0명	50명
		76.0%	8.0%	68.0%	8.0%	0.0%	0.0%	0.0%	0.0%	20.0%

⬇

[2단계] 건강증진 요구도

건강증진분야	⑧건강증진 요구도		① 장년(50세↑)	② 장시간(60hr/주↑)	③ 교대(야간)	④ 근골부담작업	⑤ 고객응대 (연무의 60%↑)	⑥ 근골격계질환 (업무상질병 3년간)	⑦ 뇌심질환 (업무상질병 3년간)	⑧ 일반검진미수검자	⑨ 일반질병 요관찰, 의심자
근골격계질환	5점	①~⑨ 항목점수 중 최고점 기재	5점			2점		1점			
뇌심혈관질환	5점		5점	2점	5점				1점	1점	3점
직무스트레스	5점			2점	5점		1점		1점		
생활습관 개선	5점		5점	2점	5점		1점		1점		3점

⬇

[2단계] 건강증진 활동 실태 (기준: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해당란에 O/X 표시)

건강증진분야	⑪ 추진 여부	⑫ 실태 조사	⑬프로그램 운영					⑭ 프로그램 적용범위	⑮사업장지원	
			집중관리 대상파악	추진프로그램 수	근로자 요구반영	성과평가	결과환류		ⓐ조직, 예산	ⓑ시설, 환경
근골질환예방	O	O	O	미실시	X	X	X	미실시	1종	해당없음
뇌심질환예방	O	O	X	1종	X	O	O	위험군+건강군	3종 미상	시설+환경
스트레스관리	O	X	X	2종	O	O	O	위험군+건강군	3종 미상	시설+환경
생활습관 개선	O	X	O	2종	O	O	O	위험군+건강군	3종 미상	시설+환경

⬇

[3단계] 건강증진 활동도

건강증진분야	건강증진 활동도 Σ(①~⑩)/4	건강증진활동별 세부 추진내역									
		① 근로자 분포특성 파악여부	② 실태조사 실시 여부	③ 집중관리대상 파악	④ 프로그램 추진 수	⑤ 근로자 요구 반영여부	⑥ 성과평가 여부	⑦ 결과환류 여부	⑧프로그램 적용범위	사업장 ⑨ 조직/예산	사업장 ⑩ 시설/환경개선
근골격계질환	1.75점	2점	2점	2점	0점	0점	0점	0점	0점	1점	0점
뇌심혈관질환	4점	2점	2점	0점	2점	0점	2점	2점	2점	2점	2점
직무스트레스	4점	2점	0점	0점	2점	2점	2점	2점	2점	2점	2점
생활습관개선	4.5점	2점	0점	2점	2점	2점	2점	2점	2점	2점	2점

⬇

[4단계]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지수 산출 <우선순위 산정시 활동지수 낮은순, 요구도점수 높은순으로 추진>

건강증진분야	추진여부 (O,X)	건강증진 요구도 ⓐ원점수 (1~5)	건강증진 요구도 ⓑ환산점수 (ⓐ * 20)			건강증진 활동도 ⓒ원점수 (1~5)	건강증진 활동도 ⓓ환산점수 (ⓒ * 20)	건강증진지수 (ⓓ/ⓑ)*100)
평균 (Σ(①~④)/4)		5점	100점			3.56점	71.3점	71.25점
① 근골격계질환 예방	O	5점	100점			1.75점	35점	35점
② 뇌심혈관질환 예방	O	5점	100점			4점	80점	80점
③ 직무스트레스 관리	O	5점	100점			4점	80점	80점
④ 생활습관 개선	O	5점	100점			4.5점	90점	90점

☞ **평가결과 : 71.25점 (활성화단계)**

우선활동 분야 : 근골격계질환 예방분야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와 증상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 사례2. 보건의료업, 상시근로자 549명

· 4조 3교대 작업형태이며 이직률이 높고 비교적 젊은 근로자로 구성 · 보건관리자가 신규 선임되어 근로자 대상 직무스트레스 및 감정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증진사업 시행을 준비 중

[1단계] 근로특성 및 건강실태 (해당자가 없는 경우 숫자 "0"을 기입, 파악하지 않았으면 빈칸)

근로, 건강	① 근로자수	② 장년(50세↑)	③ 장시간(60hr/주↑)	④ 교대(야간)	⑤ 근골부담작업	⑥ 고객응대 (연무의 60%↑)	⑦ 근골격계질환 (연무상질병 3년간)	⑧ 뇌심질환 (연무상질병 3년간)	⑨ 일반검진미수검자	⑩ 일반질병 요관찰·유소견자
근로자수	549명	36명	0명	209명	500명	350명	0명	0명	0명	4명
		6.6%	0.0%	38.1%	91.1%	63.8%	0.0%	0.0%	0.0%	0.7%

⬇

[2단계] 건강증진 요구도

건강증진분야	③건강증진 요구도		① 장년(50세↑)	② 장시간(60hr/주↑)	③ 교대(야간)	④ 근골부담작업	⑤ 고객응대 (연무의 60%↑)	⑥ 근골격계질환 (연무상질병 3년간)	⑦ 뇌심질환 (연무상질병 3년간)	⑧ 일반검진미수검자	⑨ 일반질병 요관찰, 의심자
근골격계질환	5점	①~⑨ 항목점수 중 최고점 기재	2점			5점		1점			
뇌심혈관질환	4점		2점	1점	4점				1점	1점	1점
직무스트레스	5점			1점	4점		5점		1점		
생활습관 개선	5점		2점	1점	4점		5점		1점		1점

⬇

[2단계] 건강증진 활동 실태 (기준: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해당란에 O/X 표시)

건강증진분야	⑪ 추진여부	⑫ 실태조사	⑬프로그램 운영					⑭ 프로그램 적용범위	⑮사업장지원	
			집중관리 대상파악	추진프로그램 수	근로자 요구반영	성과평가	결과환류		ⓐ조직, 예산	ⓑ시설, 환경
근골질환예방	0	0	0	1종	X	0	X	위험군+건강군	2종	해당없음
뇌심질환예방	0	0	0	1종	X	0	X	위험군+건강군	2종	해당없음
스트레스관리	0	0	0	1종	X	0	X	위험군	2종	환경
생활습관 개선	0	0	X	1종	X	0	X	위험군+건강군	2종	해당없음

⬇

[3단계] 건강증진 활동도

건강증진분야	건강증진 활동도 Σ(①~⑩)/4	건강증진활동별 세부 추진내역									
		① 근로자 분포특성 파악여부	② 실태조사 실시 여부	③ 집중관리대상 파악	④ 프로그램 추진 수	⑤ 근로자 요구 반영여부	⑥ 성과평가 여부	⑦ 결과환류 여부	⑧프로그램 적절성여부	사업장 ⑨ 조직/예산	사업장 ⑩ 시설/환경개선
근골격계질환	3.25점	2점	2점	2점	2점	0점	2점	0점	2점	1점	0점
뇌심혈관질환	3.25점	2점	2점	2점	2점	0점	2점	0점	2점	1점	0점
직무스트레스	3.25점	2점	2점	2점	2점	0점	2점	0점	1점	1점	1점
생활습관개선	2.5점	2점	2점	0점	1점	0점	2점	0점	2점	1점	0점

⬇

[4단계]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지수 산출 <우선순위 산정시 활동지수 낮은순, 요구도점수 높은순으로 추진>

건강증진분야	추진여부 (O,X)	건강증진 요구도 ⓐ원점수 (1~5)	건강증진 요구도 ⓑ환산점수 (ⓐ * 20)	건강증진 활동도 ⓒ원점수 (1~5)	건강증진 활동도 ⓓ환산점수 (ⓒ * 20)	건강증진지수 (ⓓ/ⓑ)*100)
평균 (Σ(①~④)/4)		4.75점	95점	3.06점	61.3점	65.31점
① 근골격계질환 예방	O	5점	100점	3.25점	65점	65점
② 뇌심혈관질환 예방	O	4점	80점	3.25점	65점	81.25점
③ 직무스트레스 관리	O	5점	100점	3.25점	65점	65점
④ 생활습관 개선	O	5점	100점	2.5점	50점	50점

☞ **평가결과 : 65.31점 (활성화단계)**

우선활동 분야 : 생활습관 개선분야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고위험군을 파악하고 근로자의 요구도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추진 후 성과를 평가하고 차기년도 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함.

○ 사례3. 호텔업, 상시근로자 213명

· 객실부서 4조 3교대 작업, 웨딩시즌 등 시기별로 장시간 근로 시행 · 본사의 근로자 건강관리 정책에 근거해서 매년 계획, 수행, 평가, 피드백 등 순환구조로 건강증진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1단계] 근로특성 및 건강실태(해당자가 없는 경우 숫자 "0"을 기입, 파악하지 않았으면 빈칸)

근로.건강	① 근로자수	② 장년(50세↑)	③ 장시간(60hr/주↑)	④ 교대(야간)	⑤ 근골부담작업	⑥ 고객응대 (전후의 50%↑)	⑦ 근골격계질환 (발생일 8년간)	⑧ 뇌심질환 (발생일 8년간)	⑨ 일반검진 미수검자	⑩ 일반질병 요관찰·유소견자
근로자수	213명	0명	60명	13명	150명	150명	2명	0명	2명	0명
		0.0%	28.2%	6.1%	70.4%	70.4%	0.9%	0.0%	0.9%	0.0%

⬇

[2단계] 건강증진 요구도

건강증진분야	ⓐ건강증진 요구도		① 장년(50세↑)	② 장시간(60hr/주↑)	③ 교대(야간)	④ 근골부담작업	⑤ 고객응대 (전후의 50%↑)	⑥ 근골격계질환 (발생일 8년간)	⑦ 뇌심질환 (전후발생일 8년간)	⑧ 일반검진미수검자	⑨ 일반질병 요관찰, 의심자
근골격계질환	5점	①~⑨ 합	1점			5점		5점			
뇌심혈관질환	4점	득점수 중	1점	4점	2점				1점	2점	1점
직무스트레스	5점	최고점 기		4점	2점		5점		1점		
생활습관 개선	5점	재	1점	4점	2점		5점		1점		1점

⬇

[2단계] 건강증진 활동 실태 (기준: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해당란에 O/X 표시)

건강증진분야	⑪ 추진 여부	⑫ 실태 조사	⑬프로그램 운영					⑭ 프로그램 적용범위	⑮사업장지원	
			건강증진 대상파악	추진프로그램 수	근로자 요구반영	성과평가	결과환류		ⓐ조직, 예산	ⓑ시설, 환경
근골질환예방	O	O	O	1종	O	O	O	위험군+건강군	3종 이상	시설+환경
뇌심질환예방	O	X	X	1종	O	O	O	위험군+건강군	3종 이상	시설+환경
스트레스관리	O	X	X	1종	O	O	O	위험군+건강군	3종 이상	시설+환경
생활습관 개선	O	X	X	1종	O	O	O	위험군+건강군	3종 이상	시설+환경

⬇

[3단계] 건강증진 활동도

건강증진분야	건강증진 활동도 Σ(①~⑩)/4	건강증진활동별 세부 추진내역									
		① 근로자 분포특성 파악여부	② 실태조사 실시 여부	③ 집중관리대상 파악	④ 프로그램 추진 수	⑤ 근로자 요구 반영여부	⑥ 성과평가 여부	⑦ 결과환류 여부	⑧프로그램 적절성여부	사업장 ⑨ 조직/예산	사업장 ⑩ 시설/환경개선
근골격계질환	5점	2점	2점	2점	2점	2점	2점	2점	2점	2점	2점
뇌심혈관질환	4점	2점	0점	0점	2점	2점	2점	2점	2점	2점	2점
직무스트레스	4점	2점	0점	0점	2점	2점	2점	2점	2점	2점	2점
생활습관개선	3.75점	2점	0점	0점	1점	2점	2점	2점	2점	2점	2점

⬇

[4단계]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지수 산출 <우선순위 산정시 활동지수 낮은순, 요구도점수 높은순으로 추진>

건강증진분야	추진여부 (O,X)	건강증진 요구도 ⓐ원점수 (1~5)	건강증진 요구도 ⓑ환산점수 (ⓐ * 20)	건강증진 활동도 ⓒ원점수 (1~5)	건강증진 활동도 ⓓ환산점수 (ⓒ * 20)	건강증진지수 (ⓓ/ⓑ)*100)
평균 (Σ(①~④)/4)		4.75점	95점	4.19점	83.8점	88.75점
① 근골격계질환 예방	O	5점	100점	5점	100점	100점
② 뇌심혈관질환 예방	O	4점	80점	4점	80점	100점
③ 직무스트레스 관리	O	5점	100점	4점	80점	80점
④ 생활습관 개선	O	5점	100점	3.75점	75점	75점

☞ **평가결과 : 88.75점 (우수단계)**

우선활동 분야 : 생활습관 개선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고위험군 파악이 필요

『기업건강증진지수』 세부 평가기준

○ 평가 총괄표

분 야	항목수	만점	비 고
근로특성 및 건강실태 (요구도)	10	100	장년근로자, 고객응대종사자, 건강유소견자 등
건강증진 활동실태 (활동도)	10	100	건강실태조사,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적용범위, 사업장 지원여부 등
기업건강증진지수		100	※ 활동도/요구도 x 100

○ 평가결과 분석표

단계	기업건강증진지수	권고사항
미도입	0~20점 미만	○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장 근로특성, 근로자 건강특성 등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세요.
도입	20~50점 미만	○ 건강증진활동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동을 도입했으나 아직 미흡합니다.
활성화	50~80점 미만	○ 건강증진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취약한 건강증진 분야를 찾아 활동을 강화해 주세요.
우수	80~100점	○ 건강증진활동이 우수합니다. 지속적인 건강증진활동과 우수사업장 선정에 도전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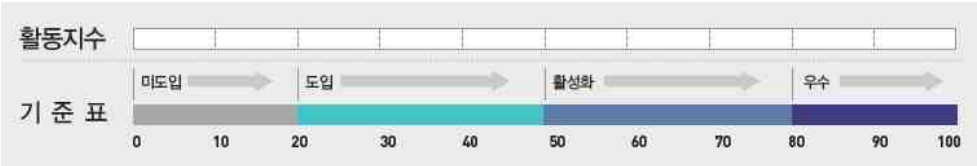

○ 평가 순서

건강 잠재위험도 작성		건강증진 요구도 산출		건강증진 활동도 산출		지수 산출
근로형태, 업무상질병 발생 현황 등 분석	⇨	필요한 건강증진활동의 정도를 산출	⇨	사업장 건강증진 활동 추진수준 평가	⇨	요구도 대비 추진 수준을 계량화

Ⅰ 건강잠재위험도 (근로자 특성 및 건강실태) 작성

1단계 | 근로자 특성 및 건강실태 (해당자가 없는 경우 숫자 "0"을 기입)

근로·건강 특성	❶ 근로자 수	❷ 장년 (50세↑)	❸ 장시간 (60hr/주)	❹ 교대 (야간)	❺ 근골부담 작업	❻ 고객응대 (업무의 50%↑)	❼ 업무상질병(3년간) 근골 질환	❽ 업무상질병(3년간) 뇌심 질환	❾ 일반검진 미수검자	❿ 일반질병 요관찰·유소견자
근로자수 (비율)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	%	%	%	%	%	%	%

① 근로자수

1. 일용직, 용역직, 사내 협력사 소속 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 소속의 정규직,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한 전체 근로자수를 기재한다.

② 장년(50세↑)

1. 50세 이상인 장년근로자 수를 기재한다.
2. ①에서 응답한 전체 근로자 중 50세 이상의 장년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작성한다.
   ※ 50세 이상 근로자수 ÷ 전체 근로자수 x 100(%)

> ☞ **주의사항**
> ◦ 50세 이상 장년근로자가 없는 경우는 '0'으로 표기
> ◦ 수를 알지 못하는 경우 빈칸으로 비워 둠.(이 경우는 요구도 3점으로 처리됨.)

③ 장시간(60hr/주)

1.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수를 기재한다.
2. ①에서 응답한 전체 근로자 중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작성한다.

   ※ 주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수 ÷ 전체 근로자수 x 100(%)

☞ **주의사항**

- 주당 근무시간은 최근 3개월간 평균값으로 계산 (근무경력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의 평균 근무시간을 계산)
-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없는 경우 '0'으로 표기
-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빈칸으로 비워 둠.(이 경우는 요구도 3점으로 처리됨.)

④ 교대(야간)

1. 교대근무나 야간근무를 하는 근로자 수를 기재한다.
2. ①에서 응답한 전체 근로자 중 교대 및 야간근무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작성한다.

   ※ 교대 및 야간근무 종사자수 ÷ 전체 근로자수 x 100 (%)

> ☞ **주의사항**
> ◦ 교대근무나 야간근무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0'으로 표기
> ◦ 해당 근로자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빈칸으로 비워 둠.(이 경우는 요구도 3점으로 처리됨.)

【 참고자료 】

◦ 야간근무

ⅰ) 최근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누적 횟수가 24회 이상)

ⅱ) 최근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누적시간이 360시간 이상)

(※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호, 별표 12의2)

◦ 교대작업 : 작업자들을 2개 반 이상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의 전체 작업시간을 늘리는 근로자 작업일정이나 작업조직방법

◦ 교대작업자 : 작업일정이 교대작업인 근로자

(※ 참고 :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 KOSHA GUIDE H-22-2011)

⑤ 근골부담작업

1. 근골격계부담작업 종사자수를 기재한다.
2. ①에서 응답한 전체 근로자 중 근골격계부담작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작성한다.

   ※ 근골격계부담작업 종사자수 ÷ 전체 근로자수 x 100 (%)

> ☞ **주의사항**
> ◦ 근골격계부담작업 종사자가 없는 경우 '0'으로 표기(이 경우는 법적 근골격계부담작업 종사자가 없더라도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요구도 2점으로 처리됨.)
> ◦ 해당 근로자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빈칸으로 비워 둠.(이 경우는 요구도 3점으로 처리됨.)

【 참고자료 】

◦ 근골격계부담작업 (다만,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은 제외)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 참고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27호)

⑥ 고객응대 (업무의 50% ↑)

1. 업무시간의 50% 이상을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기재한다.
2. ①에서 응답한 전체 근로자 중 업무의 50% 이상이 고객응대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작성한다.

   ※ 업무의 50% 이상이 고객응대인 근로자수÷전체 근로자수x100 (%)

> ☞ **주의사항**
> - 고객이라 함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을 의미하며,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면하는 동료 근로자나 상급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 업무시간의 50% 이상을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0'으로 표기
> - 해당 근로자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빈칸으로 비워 둠.(이 경우는 요구도 3점으로 처리됨.)

【 참고자료 】

- 고객응대업무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등으로 일대일로 대화하는 업무를 의미함.
  (※ 참고 : Hochschild(1983)의 The Managed Heart :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

- 고객응대업무는 '직업상 고객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이 좋거나, 슬프거나, 화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사업장(회사)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감정노동을 수반함.
  (※ 참고 : 감정노동평가 지침, KOSHA GUIDE H-163-2014)

⑦ 업무상질병 (근골격계질환)

1. 최근 3년간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질병(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근로자수를 기재한다.
2. ①에서 응답한 전체 근로자 중 최근 3년간 근골격계질환자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작성한다.
   ※ 최근 3년간 근골격계질환자수 ÷ 전체 근로자수 x 100 (%)

> ☞ **주의사항**
> ◦ 최근 3년간의 질환 판정자수를 기재함. 만약 1인이 근골격계질환 중 다른 진단명으로 2회 업무상질병을 판정 받았다면 2인으로 간주함.
> ◦ 근골격계질환 업무상질병 판정자가 없는 경우 '0'으로 표기
> ◦ 해당 근로자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빈칸으로 비워 둠.(이 경우는 요구도 3점으로 처리됨.)

【 참고자료 】

◦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 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함.
(※ 참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56조)

⑧ 업무상질병 (뇌심혈관질환)

1. 최근 3년간 뇌심혈관질환으로 업무상질병(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근로자 수를 기재한다.
2. ①에서 응답한 전체 근로자 중 최근 3년간 뇌심혈관질환자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작성한다.

   ※ 최근 3년간 뇌심혈관질환자수 ÷ 전체 근로자수 x 100 (%)

> ☞ **주의사항**
> - 최근 3년간의 질환 판정자수를 기재함. 만약 1인이 뇌심혈관질환 중 다른 진단명으로 2회 업무상질병을 판정 받았다면 2인으로 간주함.
> - 뇌심혈관질환 업무상질병 판정자가 없는 경우 '0'으로 표기
> - 해당 근로자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빈칸으로 비워 둠.(이 경우는 요구도 3점으로 처리됨.)

【 참고자료 】

- 뇌심혈관질환이란 심장, 심혈관 및 뇌혈관계통에서 발생한 질환으로서, 심근경색증·뇌졸중(뇌경색·지주막하출혈·뇌실질내출혈)·해리성대동맥류 등을 말함.

  (※ 참고 : 직장에서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KOSHA GUIDE H-1-2012)

⑨ 일반검진미수검자

1. 최근 1년간 일반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 수를 기재한다.
2. ①에서 응답한 전체 근로자 중 최근 1년간 일반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작성한다.

   ※ 최근 1년간 일반검진 미수검자수 ÷ 전체 근로자수 x 100 (%)

> ☞ **주의사항**
> ◦ 최근 1년간의 미수검자수를 기재함.
> ◦ 일반건강진단 미수검자가 없는 경우 '0'으로 표기
> ◦ 해당 근로자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빈칸으로 비워 둠.(이 경우는 요구도 3점으로 처리됨.)

【 참고자료 】

◦ 일반건강진단이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사무직 근로자는 : 2년에 1회 이상, 기타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아니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타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 실시 인정)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

② 항공법에 의한 신체검사
③ 학교보건법에 의한 건강검사
④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건강진단
⑤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⑥ 그 밖에 제100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 1차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100조)

⑩ 일반질병 요관찰자, 유소견판정자

1. 최근 1년간 일반건강진단 결과 일반질병 요관찰자(C2) 및 유소견자(D2)로 판정된 근로자 수를 기재한다.
2. ①에서 응답한 전체 근로자 중 최근 1년간 요관찰자(C2) 및 유소견자(D2)가 차지하는 비율을 작성한다.

   ※ 요관찰자(C2) 및 유소견자(D2) ÷ 전체 근로자수 x 100 (%)

> ☞ **주의사항**
> ◦ 일반질병 요관찰자(C2) 및 유소견자(D2)가 없는 경우 '0'으로 표기
> ◦ 해당 근로자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빈칸으로 비워 둠.(이 경우는 요구도 3점으로 처리됨.)

【 참고자료 】

◦ 일반질병 요관찰자 (C2) :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자

◦ 일반질병 유소견자 (D2) : 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 참고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3호)

Ⅲ 건강증진 요구도 산출

1단계 | 건강 잠재위험도

※ 1 의 '근로자 특성'의 해당항목 비율을 참조하여 점수 부여(1~5점)

건강잠재 위험도 (5점척도)		❶ 장년 (50세↑)	❷ 장시간 (60hr/주)	❸ 교대 (야간)	❹ 근골부담 작업	❺ 고객응대 (업무의 50%↑)	❻ 업무상질병(3년간) 근골질환	❼ 업무상질병(3년간) 뇌심질환	❽ 일반검진 미수검자	❾ 일반질병 요관찰·유소견자
근로자 비율	5점	50%이상	50%이상	50%이상	50%이상	50%이상	2명이상	1명이상	5%이상	50%이상
	4점	25%~50%미만	25%~50%미만	25%~50%미만	25%~50%미만	25%~50%미만	1명		3%~5%미만	25%~50%미만
	3점	10%~25%미만	10%~25%미만	10%~25%미만	10%~25%미만	10%~25%미만			1%~3%미만	10%~25%미만
	2점	1%~10%미만	1%~10%미만	1%~10%미만	10%미만	1%~10%미만			1%미만	1%~10%미만
	1점	1%미만	1%미만	1%미만		1%미만	없음	없음	없음	1%미만

※ 미파악의 경우 3점 부여

2단계 | 건강증진 요구도

※ 근로자 특성(①~⑨)별 '[1단계] 건강 잠재위험도' 점수를 기재한 후, 기재한 값 중 최대값을 요구도점수로 기재(1~5점)

건강증진분야	건강증진 요구도 (5점 척도)	❶ 장년 (50세↑)	❷ 장시간 (60hr/주)	❸ 교대 (야간)	❹ 근골부담 작업	❺ 고객응대 (50%↑)	❻ 업무상질병(3년간) 근골질환	❼ 업무상질병(3년간) 뇌심질환	❽ 일반검진 미수검자	❾ 일반질병 요관찰·유소견자
근골격계질환	점	점			점		점			
뇌심혈관질환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직무스트레스	점		점	점		점		점		
생활습관 개선	점	점	점	점		점		점		점

1. 1단계에서 실시한 건강잠재위험도(근로자 특성 및 건강실태)를 근거로 하여 해당항목 비율에 따라 점수를 1~5점 부여한다.

※ 미파악의 경우 3점 부여

◦ 사례 1) 전체 근로자(560명) 중 50세 이상 장년근로자가 60명
→ 장년근로자의 비율 10.7%
→ **3점 부여**

◦ 사례 2) 최근 3년간 뇌심혈관질환자 2명 발생
→ **5점 부여**

◦ 사례 3) 최근 3년간 근골격계질환자 1명 발생

→ 4점 부여

◦ 사례 4) 전체 근로자(560명) 중 최근 1년간 일반질병 요관찰자(C2) 2명, 유소견자(D2) 1명 발생

→ 요관찰자와 유소견자가 총 3명, 전체 근로자의 0.5%

→ **1점 부여**

2. 건강증진분야별로 건강증진 요구도를 산출한다. 해당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요구도로 한다.

건강증진분야	⑧건강증진 요구도		① 장년(50세↑)	② 장시간 (60hr/주↑)	③ 교대(야간)	④ 근골부담작업	⑤ 고객응대	⑥ 근골격계질환	⑦ 뇌심질환	⑧ 일반검진미수검자	⑨ 일반질병 요관찰, 의심자
근골격계질환	5점	①~⑨ 항목점수 중 최고점 기재	3점			5점		2점			
뇌심혈관질환	3점		3점	2점	3점				1점	1점	2점
직무스트레스	4점			2점	3점		4점		1점		
생활습관 개선	4점		3점	2점	3점		4점		1점		2점

◦ 요구도 점수

- 근골격계질환관리 : ①, ④, ⑥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 **5점**
- 뇌심혈관질환관리 : ①, ②, ③, ⑦, ⑧, ⑨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 **3점**
- 직무스트레스관리 : ②, ③, ⑤, ⑦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 **4점**
- 생활습관개선 : ①, ②, ③, ⑤, ⑦, ⑨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 **4점**

Ⅲ 건강증진 활동도 산출

3단계 | 건강증진 활동도

※ 건강증진활동 추진분야별 추진여부에 따라 ① ~ ⑩해당 란에 점수(0~2점) 표시

건강증진분야	건강증진 활동도 (5점 만점) ∑(❶~❿) / 4	건강증진활동별 세부 추진내역									
		❶	❷	❸	❹	❺	❻	❼	❽	❾	
		근로자 분포특성 파악여부	실태조사 실시여부	집중관리 대상파악	프로그램 추진 수	근로자 요구 반영여부	성과평가 여부	결과환류 여부	프로그램 적용범위	사업장 지원여부	
										조직/예산	시설/환경개선
근골격계질환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뇌심혈관질환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직무스트레스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생활습관개선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수	건강증진활동별 세부 추진여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사업장 지원여부	
									⑨	⑩
	근로자 분포특성 파악여부	실태조사 실시여부	집중관리 대상파악	프로그램 추진수	근로자 요구 반영여부	성과평가 여부	결과환류 여부	프로그램 적용범위	조직 /예산	시설/환경 개선
2점	80% 이상	실시	실시	2종 이상	실시	실시	실시	건강인 포함	3종 이상	2분야
1점	50% 이상	-	-	1종	-	-	-	위험군 포함	1~2종	1분야
0점	50% 미만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포함	미지원	미적용

* ④프로그램추진 수 : 생활습관개선 분야에 한함. 타 분야의 경우 1종이상 2점, 미실시 0점 부여

① 근로자 분포특성 파악여부

1. 건강증진 요구도(2단계)를 파악할 때 건강증진 분야별로 조사해야 할 항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2. 배점 : 2점(80% 이상 파악), 1점(50%~79% 파악), 0점(50% 미만 파악)

【사례】

근로.건강	① 근로자수	② 장년 (50세↑)	③ 장시간 (60hr/주↑)	④ 교대(야간)	⑤ 근골 부담 작업	⑥ 고객 응대 (전부의 50%)	⑦ 근골격계질환 (전부상출발 3년간)	⑧ 뇌심질환 (전부상출발 3년간)	⑨ 일반검진 미수검자	⑩ 일반질병 요관찰, 유소견자
근로자수	560명	?	20명	?	300명	?	1명	2명	?	60명
			3.6%		53.6%		0.2%	0.4%		10.7%

⬇

건강증진분야	⑩건강증진 요구도		① 장년(50세↑)	② 장시간 (60hr/주↑)	③ 교대(야간)	④ 근골부담작업	⑤ 고객응대 (전부의 50%)	⑥ 근골격계질환 (전부상출발 3년간)	⑦ 뇌심질환 (전부상출발 3년간)	⑧ 일반검진미수검자	⑨ 일반질병 요관찰, 의심자
근골격계질환		①~⑨ 항목점수 중 최고점 가재	?			5점		3점			
뇌심혈관질환			?	2점	?				4점	?	3점
직무스트레스				2점	?		?		4점		
생활습관 개선			?	2점	?		?		4점		3점

- 근골격계질환관리 : ①④⑥ 중 2개 파악하므로
  2개/3개 X 100 = 66.6% → **1점**
- 뇌심혈관질환관리 : ①②③⑦⑧⑨ 중 3개 파악하므로
  3개/6개 x 100 = 50% → **1점**
- 직무스트레스관리 : ②③⑤⑦ 중 2개 파악하므로
  2개/4개 x 100 = 50% → **1점**
- 생활습관관리 : ①②③⑤⑦⑨ 중 3개 파악하므로
  3개/6개 x 100 = 50% → **1점**

② 실태조사 실시여부

1.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특성, 환경적 특성 등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2. 배점 : 2점(실시), 0점(미실시)

【 실태조사의 예 】

◦ 근골격계질환 예방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근골격계질환 실태조사, 인간공학적 유해요인조사 등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KOSHA GUIDE H-9-2012

◦ 뇌심혈관질환 예방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기초질환 유병자 조사, 기초질환 관리(의료이용, 투약순응, 합병증) 실태조사, 대사증후군 유병자 조사 등

※ 직장에서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KOSHA GUIDE H-1-2013

◦ 직무스트레스 예방 :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KOSS)를 이용한 설문조사, 감정노동 측정 평가, 우울증 조사 등

※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지침, KOSHA GUIDE H-67-2012
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평가 지침, KOSHA GUIDE H-163-2016

◦ 생활습관관리 : 흡연, 음주, 비만, 운동실천, 식이습관, 수면습관 등에 관한 설문조사 등

③ 집중관리 대상파악

1. 집중관리 해야 할 고위험 근로자를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2. 배점 : 2점(파악), 0점(미파악)

【 집중관리 대상의 예 】

◦ 근골격계질환 예방 : 근골격계질환자, 근골격계부담작업 종사자, 근골격계질환 증상호소자 등

◦ 뇌심혈관질환 예방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요관찰자 및 유소견자, 대사증후군 근로자,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상 고위험군 등

◦ 직무스트레스 예방 : 직무스트레스 측정 시 고위험군, 우울 호소군, 감정노동이 중간값 이상인 근로자 등

◦ 생활습관관리 : 흡연자, 음주자, 비만자, 아침결식자 등

④ 프로그램 추진 수

1. 최근 1년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프로그램의 개수를 의미한다.

2. 배점

◦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직무스트레스 : 2점(1종 이상), 0점(미실시)

◦ 생활습관 개선 : 2점(2종 이상), 1점(1종), 0점(미실시)

【 프로그램의 예 】

◦ 근골격계질환 예방 : 직장인 체조, 스트레칭 교육, 올바른 작업자세 지도, 운동처방 및 상담, 인간공학적 개선(작업대, 작업의자, 작업공구) 등

◦ 뇌심혈관질환 예방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관리 및 교육,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등

※ 뇌심혈관질환 자체에 대한 활동만 인정, 개별적인 스트레스나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은 불인정

◦ 직무스트레스 관리 : 스트레스 검사 및 심리상담, 스트레스 완화프로그램(명상, 요가), 동료관계 개선지원 (동호회), 직무스트레스 관리교육, 감정노동관리교육

◦ 생활습관 개선 : 금연, 절주, 식생활개선, 비만관리, 운동요법 지도,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 사고예방

☞ **주의사항**

◦ 외부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이라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음. 예를 들어, 분기별 1회(년 4회) 보건소 금연지도사가 방문상담하는 경우 프로그램 1종을 운영한다고 볼 수 있음.

⑤ 근로자 요구 반영여부

1.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수립 시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지를 의미한다.
2. 배점 : 2점(반영), 0점(미반영)

【요구반영의 예 】

◦ 근로자 면담, 사내 의견 게시판, 설문조사, 소식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근로자의 요구도를 파악하는 경우

◦ 온라인 의견게시판 분석을 근거하여 건강증진활동 내용을 수정하거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노사위원회 등을 통해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계획을 논의하는 경우

◦ 건강진단결과를 분석하여 건강증진활동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경우

◦ 건강관리실 이용실적 분석을 통해 건강증진활동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

◦ 협력업체와의 월례회의를 통해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의견을 받음

⑥ 성과평가 여부

1.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동결과를 분석하는 등 성과평가를 실시하는지를 의미한다.
2. 배점 : 2점(실시), 0점(미실시)

【 성과평가의 예 】

◦ 프로그램 사전사후에 콜레스테롤 수치, inbody 검사결과, 스트레스 수치 등을 비교하여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평가
◦ 프로그램 계획 수립 단계에서 세웠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평가
◦ 교육 후 근로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
◦ 고위험 근로자의 참여율을 산출하여 평가
◦ 스트레스 고위험군의 비율이 감소하였는지 평가
◦ 흡연율이 감소하였는지 평가

☞ **주의사항**
◦ 동일 분야에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성과평가를 부분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2점(실시)로 배점
◦ 예를 들어, 뇌심혈관질환 예방분야에서 2종(심폐소생술 교육, 당뇨환자 건강상담)을 운영하고 있는데,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만족도 평가는 실시하였으나 당뇨환자 건강상담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실시'로 인정

⑦ 결과환류 여부

1.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동결과를 토대로 차후 건강증진활동계획이 수립되는지, 활동결과의 내용이 차기년도 계획에 반영되지를 의미한다.
2. 배점 : 2점(실시), 0점(미실시)

【 결과환류의 예 】

◦ 전년도 목표 달성치를 고려하여 올해 활동목표를 수립함.
◦ 전년도 발견된 추진 상 문제점을 올해 개선하여 시행함.
◦ 근로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년과는 다른 방안을 도입함.

⑧ 프로그램 적용범위

1.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건강군, 위험군, 고위험군을 포함시키는지를 의미한다.
2. 배점 : 2점(건강인도 포함), 1점(위험군, 고위험군 포함), 0점(미포함)

【 위험군 및 고위험군의 예 】

◦ 근골격계질환 예방 : 근골격계질환 증상호소자, 근골격계부담작업 종사자, 근골격계질환자 등

◦ 뇌심혈관질환 예방 : 일반질환 요관찰자(C2) 및 유소견자(D2),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뇌심혈관질환 기초질환자, 대사증후군 근로자,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상 고위험군 등

◦ 직무스트레스 관리 : 우울증 호소자, 직무스트레스 측정결과 한국근로자 중앙값 이상인 자, 감정노동 측정결과 한국근로자 중앙값 이상인 자, 공황장애 호소자 등

※ 직무스트레스 요인 측정지침, KOSHA GUIDE H-67-2012
고객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평가 지침, KOSHA GUIDE H-163-2016

◦ 생활습관 개선 : 흡연자, 음주자, 비만자, 운동미실천자, 아침결식자 등

⑨ 조직/예산

1. 최근 1년 동안 건강증진 프로그램 추진을 위하여 회사에서 추진조직, 추진예산, 인센티브, 벤치마킹, 담당자 교육 중 몇 종을 지원하였는지를 의미한다.

   1-1.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인력, 부서, 담당자 등이 지정되어 있는가?

   1-2. 건강증진활동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는가?

   1-3. 건강증진활동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근로자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가?

   1-4. 건강증진활동 추진과 관련된 국내외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데 회사가 지원하는가?

   1-5. 건강증진활동 추진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유지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화교육, 기술 세미나, 워크숍 등에 참여하도록 회사가 지원하는가?

2. 배점 : 2점(3종 이상), 1점(1~2종), 0점(미지원)

【 추진조직의 예 】

◦ 사업장 내 건강증진활동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
◦ 건강증진활동 담당 부서의 건강증진활동 전담인력
◦ 건강증진활동 추진자로 의사, 간호사, 영양사, 심리상담사, 운동지도사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
◦ 각 부서에 건강증진활동 담당자 지정

【 추진예산의 예 】

◦ 조직 운영비, 네트워크 활동비, 건강증진 프로그램 진행비, 강사초청비, 전문가 자문비, 교육자료 제작비, 홍보자료 구입비, 장비 및 기구 구입비, 각종 물품 구입비, 외부교육 이수비, 관련단체 가입비 등

> ☞ **주의사항**
> ◦ 건강증진활동을 위해 별도의 항목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함. 예를 들어,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C/S팀의 예산을 차용해 오는 경우 회사가 추진예산을 지원한다고 보기 어려움.
> ◦ 정규인력 인건비 및 근로자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됨.

【 인센티브의 예 】

◦ 상금, 상품권, 복지 포인트, 선물 등의 현물
◦ 인사혜택, 포상휴가, 연수기회 제공 등의 혜택

【 벤치마킹의 예 】

◦ 각종 경연대회, 관련 유관단체의 소식지 등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참고함.
◦ 기관 건강증진 추진자(보건관리자)와의 공식·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의견교환함.

【 교육지원의 예 】

◦ 건강증진활동 추진자가 법적 의무교육(보건관리자 직무교육, 의료인 면허 보수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교육비 지원

1. 건강증진 분야별로 10개 평가항목의 점수를 기재한다.

2. 건강증진 분야별 점수를 모두 합하여 4로 나누어 활동도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3단계] 건강증진 활동도

건강증진분야	건강증진 활동도 Σ(①~⑩)/4	건강증진활동별 세부 추진내역									
		① 근로자 분포특성 파악여부	② 실태조사 실시 여부	③ 집중관리대상 파악	④ 프로그램 추진 수	⑤ 근로자 요구 반영여부	⑥ 성과평가 여부	⑦ 결과환류 여부	⑧프로그램 적절물의	사업장 ⑨ 조직/여산	사업장 ⑩ 사업/[illegible]
근골격계질환	4점	0점	2점	2점	1점	2점	2점	2점	1점	2점	2점
뇌심혈관질환	4점	0점	2점	2점	2점	0점	2점	2점	2점	2점	2점
직무스트레스	2.25점	0점	2점	0점	1점	2점	0점	0점	2점	1점	1점
생활습관개선	0.75점	0점	0점	0점	0점	0점	0점	0점	2점	1점	0점

⑩ 시설/환경 개선

1. 회사가 환경개선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2. 배점 : 2점(2분야 모두 지원), 1점(1분야만 지원), 0점(미지원)

【 환경개선 및 시설개선의 예 】

분야	환경개선	시설개선
근골격계 질환예방	◦전 직원 체조시간 마련 ◦운동 동호회 지원	◦체력단련실 마련 ◦인간공학적 작업환경개선 (예, 손목보호대 구비 등) ◦물리치료장비 구비 ◦입식의자 비치
뇌심혈관 질환예방	◦저염식단 도입 ◦야간근무조 개선	◦제세동기 비치 ◦혈압계 비치
직무스트레스 관리	◦동호회 지원 ◦Stress Zero의 날(이벤트)	◦심리상담실 마련 ◦스트레스 측정기 구비
생활습관 개선	◦금연건물 선포 ◦화장실 금연구역 지정 ◦회식 없는 날 지정	◦사내 산책코스 정비 ◦흡연실 마련

☞ **주의사항**
- 환경개선 : 제도, 규정, 규칙 등 Software의 개선 (문화 조성)
- 시설개선 : 설비, 장비 등 hardware의 개선

Ⅳ 기업건강증진지수 산출

1. 건강증진 요구도 점수 환산

1-1. 건강증진 분야별 요구도 환산점수를 산출한다.

분야별 환산점수 = 분야별 원점수 x 20

1-2. 종합한 요구도 환산점수를 산출한다.

종합 요구도 환산점수 = 분야별 요구도 환산점수의 합 ÷ 4

건강증진분야	추진여부 (O,X)	건강증진 요구도		건강증진 활동도		건강증진지수 (ⓓ/ⓑ)*100)	활동단계
		ⓐ원점수 (1~5)	ⓑ환산점수 (ⓐ * 20)	ⓒ원점수 (1~5)	ⓓ환산점수 (ⓒ * 20)		
평균 (∑(①~④)/4)		4점	80점				
① 근골격계질환 예방	O	4점	80점				
② 뇌심혈관질환 예방	O	4점	80점				
③ 직무스트레스 관리	O	4점	80점				
④ 생활습관 개선	O	4점	80점				

2. 건강증진 활동도 점수 환산

2-1. 건강증진 분야별 활동도 환산점수를 산출한다.

분야별 환산점수 = 분야별 원점수 x 20

2-2. 종합한 활동도 환산점수를 산출한다.

종합 활동도 환산점수 = 분야별 활동도 환산점수의 합 ÷ 4

건강증진분야	추진여부 (O,X)	건강증진 요구도		건강증진 활동도		건강증진지수 (ⓓ/ⓑ)*100)	활동단계
		ⓐ원점수 (1~5)	ⓑ환산점수 (ⓐ * 20)	ⓒ원점수 (1~5)	ⓓ환산점수 (ⓒ * 20)		
평균 (∑(①~④)/4)		4점	80점	2.6875점	53.75점		
① 근골격계질환 예방	O	4점	80점	2.75점	55점		
② 뇌심혈관질환 예방	O	4점	80점	4.5점	90점		
③ 직무스트레스 관리	O	4점	80점	2.25점	45점		
④ 생활습관 개선	O	4점	80점	1.25점	25점		

3. 건강증진지수 산출

3-1. 건강증진 분야별 건강증진지수를 산출한다.

$$\text{분야별 건강증진지수} = \frac{\text{분야별 활동도 환산점수}}{\text{분야별 요구도 환산점수}} \times 100$$

3-2. 종합한 기업건강증진지수를 산출한다.

종합 건강증진지수 = 분야별 건강증진지수의 합 ÷ 4

건강증진분야	추진여부 (O,X)	건강증진 요구도		건강증진 활동도		건강증진지수 (ⓓ/ⓑ)*100)	활동단계
		ⓐ원점수 (1~5)	ⓑ환산점수 (ⓐ × 20)	ⓒ원점수 (1~5)	ⓓ환산점수 (ⓒ × 20)		
평균 (∑(①~④)/4)		4점	80점	2.6875점	53.75점	64.0625점	
① 근골격계질환 예방	O	4점	80점	2.75점	55점	68.75점	
② 뇌심혈관질환 예방	O	4점	80점	4.5점	90점	100점	
③ 직무스트레스 관리	O	4점	80점	2.25점	45점	56.25점	
④ 생활습관 개선	O	4점	80점	1.25점	25점	31.25점	

4. 건강증진지수에 근거한 활동단계 평가

2-1. 건강증진 분야별 활동단계를 평가한다.

2-2. 종합하여 기업의 건강증진 활동단계를 평가한다.

건강증진분야	추진여부 (O,X)	건강증진 요구도		건강증진 활동도		건강증진지수 (ⓓ/ⓑ)*100)	활동단계
		ⓐ원점수 (1~5)	ⓑ환산점수 (ⓐ × 20)	ⓒ원점수 (1~5)	ⓓ환산점수 (ⓒ × 20)		
평균 (∑(①~④)/4)		4점	80점	2.6875점	53.75점	64.0625점	활성화 단계
① 근골격계질환 예방	O	4점	80점	2.75점	55점	68.75점	활성화 단계
② 뇌심혈관질환 예방	O	4점	80점	4.5점	90점	100점	우수단계
③ 직무스트레스 관리	O	4점	80점	2.25점	45점	56.25점	활성화 단계
④ 생활습관 개선	O	4점	80점	1.25점	25점	31.25점	도입단계

『기업건강증진지수』 활용의 예

◦ 사례 1) 연간 건강증진활동 계획 수립 전, 지난해 건강증진활동 내용을 근거로 기업건강증진지수를 산출하여 우선지원이 필요한 건강증진분야(취약 분야)를 결정한다.

◦ 사례 2) 매년 말 기업건강증진지수를 산출하여 우리 사업장의 건강증진 활동이 얼마나 진척되고 있는지를 진단한다.

◦ 사례 3) 동종업종, 동일규모에 있는 타 사업장의 기업건강증진지수와 비교하여 우리 사업장 수준을 진단한다.

◦ 사례 4) 가장 바람직한 건강증진활동수준(100점)에 비하여 우리 사업장의 활동수준은 어디까지 왔는지 점검한다.

◦ 사례 5) 연말 건강증진활동 우수공장 선정 시 기업건강증진지수를 활용하여 심사한다.

◦ 사례 6) 협력업체 평가 시 기업건강증진지수를 적용한다.

◦ 사례 7) 건강증진활동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기업건강증진지수를 활용한다.